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장도 가능 BUT 자진 폐쇄의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 아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정 내용



1.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 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

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의료기관 아닌 민간업

체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2.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장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조치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야 합니다.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의료기관 아닌 민간업체

손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3. 최근 복지부 해명자료 -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장의 폐쇄로 인한 손실보상 여부는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음

#### [복지부 해명]

○ 코로나19 환자 발생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민간영업장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기로 결정되었고,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은 환자들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 외의 사업장, 법인·단체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다만, 개정된 발의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국회 심의 등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확대적용 여부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며,

- 이에 대해서는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분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정레브리핑 질의답변 시에도 해당 사항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전제로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참고 : 2.14일 부분부장(보건복지부 차관) 발언내용>

□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료기관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 2015년 메르스 이후에도 보상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졌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물 전체가 폐쇄된 정부 명령에 의해서 폐쇄됐었던 경우에 한해서 거기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될 개정안 중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기관 이외의 범위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의 논의도 필요하고, 국회가 열리게 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논의, 긍정적인 측면과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같이 고려해서 균형되게 논의가 돼야 될 거다, 라는 게 입장입니다.

4.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민간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보상청구 가능함.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도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은 예외적 사례 있음. 향후 정부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여부를 심의 결정할 것임.

약사변호사, 감염병, 면허대여,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전략적총괄대응, 실무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